

## 장학금 운영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적용)** 본 시행세칙은 등록횟수가 8회(학기)이내인 대신대학교 소속의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2016.12.20.)

**제3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등록금, 기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내장학금중 등록금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

기금은 기금으로 적립된 재원에서 장학금 용도로 쓰는 경비를 말한다.

2. 교외장학금

교육부와 기타 국고에서 지원되어 쓰는 경비와 외부에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등록금)의 종류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제5조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중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

**제6조 (장학금 지급 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 시 납입금의 일부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수혜 여부가 등록금 수납 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의 중복 수혜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우선시하여 차액에 대해서만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2019. 2. 1 개정)

**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① 모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12.20.)

② 교내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려운 장학생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개정(2016.12.20.)

③ 이중 수혜 또는 3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자 중 근로장학금, 생활비(생활비 보조) 명목의 장학금, 도서 지원 장학금, 기숙사 지원 장학금, 봉사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학업 장려비 성격 장학금, 대가성 장학금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8조 (장학금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온라인)을 하지 않은 자.
3.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자
5. 휴학이나 제적된 자 신설

**제9조 (장학금 수혜 유효기간)**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한다.

**제10조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교내 각종 장학금 내역(학부)

학부 장학내역				
장학금종류	장학금자격	수혜금액	성적기준	비고
신입생교내 신성적우수장 학금 (학부신입생)	신입학생	전학년 전과정 1,2등급이내 -4년간수업료전액 3,4등급이내 -2년간수업료전액	교내신등 1,2,3,4등 급 (1,2,3학년 전교육과정 )	당해년도 신입생(1학년 1학기만 신청가능) 성적증명서전과정전과목이 1,2등급이내또는3,4등급이내 성적을명확히알아볼수있어야합니다. 성적이등급(예:1등급,2등급)으로 표시되어야합니다.
대신사랑장학 금	수혜가능 장학금 타인 양도	장학금 수혜액		본인의사 표명 후 타인 지정
임원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전액	80점 이상	기획, 사무, 재정, 문서 총무, 홍보, 학술, 신앙, 친교
	총학생회 부회장	수업료 1/2		
	총학생회 정임원	60만원		
	총학생회 부장	30만원		
	각 학회 회장	30만원		
	대의원회 의장	수업료 1/2		
	대의원회 임원	20만원		
	동아리 회장	60만원		
동아리 총무	30만원			부의장, 총무, 서기, 회계
동아리 회계	30만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수업료 전액	70점 이상	본인, 배우자, 자(손)녀
군중장학금	군중사관 후보생	수업료 반액	80점 이상	군중사관후보생 합격자
만학도장학금	신입생중 등록자	50만원 (입학시1회)		졸업 후 10년 또는 만30세 이상으로 학과추천(입학정원10%내)
근로장학금 (각팀당신대 원 학생2명이내)	학보사 편집장	80만원		1명
	학보사 기자	60만원		3명
	학보사 수습기자	40만원		1명
	방송 팀장	80만원		1명
	방송팀 정팀원	60만원		6명 (반주자 2 포함)
	양호실근로 및 각종교내근로	1일 30,000원		
토요근로	1일 40,000원			
가족장학금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각 50만원	80점 이상	신청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각자) 부모자녀(자녀미혼),형제자매(둘다미혼)
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 0~3구간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전액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자동 적용
	기초수급자 중 8학기 초과자	등록금 반액		국가장학금 신청후 8회 초과 탈락자
복지장학금 (장애학생)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이며 1유형4,5구간	40만원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4,5구간만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교 재학중 외국인	수업료 1/2	평점 3.5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수업료 1/3	평점3.49- 2.75	
		수업료 1/4	평점2.74- 2.0	
외부장학금	기부금	소정액		기부시 지정 또는 비지정(장학위원회)
교직원 및 직계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등록금 전액		
교직원 형제자매	형제 자매	수업료 1/2		
행정조교 직계	부모, 자녀, 배우자	수업료 1/2		
추천장학금	총장추천자 장학위원회추천자 학과장추천자	1.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일정액 2.총장이별도로 정한일정액		
소망장학금	학과추천	30만원	80점 이상	학과별 기준에 따라 추천 신청은안-2명 사복,상급-1명
창업장학금	창업지원센터 추천	50/100만원		재학생이 창업 후 일정기간 사업유지시 지급 자세한내용은창업지원센터에문의
교직원 추천 장학금	본교 교직원이 추천하는 자 (단,1명이원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일정액		
음악경연대회 (대신대학교 음악학부추최 )	대상	4년간 전면	85점 이상	성적 유지 조건, 휴학시 지급 종료
	일등	2년간 반액		
	이등	1년간 반액		
	삼등	1학기 반액		
	장려상	입학금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만 34세이하)	수업료 전액	70점 이상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만 34세이상)	100만원	80점 이상	위 기준자격 미달자

\* 추천장학금, 만학도장학금은 이종지급 규정에 적용받지 않지만 수업료 전액범위에서 지급한다.